

청렴계약 시행

1 배경

- 최근 정부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청렴관련 조항*을 신설(금년 6월중 시행 예정)하고 동법 「시행령」 및 「시행규칙」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음

* 제5조의2(청렴계약) 및 제5조의3(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·해지 등)

2 시행 방안

- 당행의 청렴문화 조기 확산을 위하여 2013. 4. 1.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서(승낙서 등 포함)에 아래와 같은 청렴조항 (불가피하게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의 조정)을 반영

< 청렴조항 예시 >

제〇〇조(청렴계약) ① “갑” 과 “을” 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(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)에서 직접적·간접적으로 금품·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,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“갑” 은 “을” 이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·해지한다. 다만, 금품·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,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,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“갑” 의 업무상 지장 및 손해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“갑” 은 “을” 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“을” 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·해지에 대하여 “갑” 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3 향후 계획

-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이 정비되는 대로 당행도 청렴관련 내용을 계약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